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

- 금융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험료 산출 체계로 현금흐름방식(Cash Flow Pricing)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 기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‘보험업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통과시킴.
 - 보험료 산출체계에 있어서는 현행 30이원방식(위험률·이자율·사업비율)이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으로 도입되고,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도 현재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 출재분을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함.
 - 보험감독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업카드사들에도 불공정 모집 금지, 판매비중 제한, 모집방법 제한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, 판매상품 및 모집인수 제한 규제는 현재처럼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.
 - 아울러 보험사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등 경영가능업무 확대를 통해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을 합리화하고, 현재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동산권리보험을 추가하여 권리보험으로 확대하기로 함.

-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·보완한 것임.
 - 현금흐름방식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30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병행하기 보다는 3년간은 병행 사용하되, 제도시행 4년째부터는 현금흐름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함.
 -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는 수탁기관의 조직구조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,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탁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하기로 함.
 - 특별계정의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와 관련해서도 대출업무 전체에 대해 일반계정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도록 허용함.

- 금번 시행령(안)은 공포 등을 거쳐 금년 12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, 현금흐름방식 조문은 2010년 4월, 재보험회계처리 방식 조문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.

(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2/22)